

# 평촌 센텀퍼스트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29일 모집공고 내용 중 공급금액 및 분양일정 정정 및 표기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정정함.(9, 11, 27, 33, 36 page)

■ (9 page)

[변경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20698호 (2022. 12. 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변경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2051호 (2023. 02.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9 page)

[변경 전]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br>(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   |  |                               |
| 일 정 | 2023년 01월 09일(월)   | 2023년 01월 10일(화)   | 2023년 01월 11일(수) | 2023년 01월 17일(화)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04일(토)  | 2023년 02월 06일(월) ~ 02월 10일(금)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 ~ 16:00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li> <li>-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li> </ul>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전시관</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방문</li> <li>주택전시관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li> </ul> |  |                               |

[변경 후]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br>(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   |  |                               |
| 일 정 | 2023년 01월 09일(월)   | 2023년 01월 10일(화)   | 2023년 01월 11일(수) | 2023년 01월 17일(화)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10일(금)  | 2023년 02월 13일(월) ~ 02월 17일(금)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 ~ 16:00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li> <li>-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li> </ul>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전시관</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방문</li> <li>주택전시관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li> </ul> |  |                               |

■ (11 page)

[변경 전]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자납<br>(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36   | 123동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 6~19층 | 24  | 258,816,000 | 280,384,000 | 539,200,000 | 53,920,000 | 53,920,000         | 431,360,000 |
| 46   | 118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4~5층  | 11  | 326,880,000 | 354,120,000 | 681,000,000 | 68,100,000 | 68,100,000         | 544,800,000 |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 (10%)<br>자납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   | 6~19층  | 72  | 330,000,000 | 357,500,000 | 687,500,000   | 68,750,000  | 68,750,000      | 550,000,000 |
|      |   | 20~29층 | 7   | 333,120,000 | 360,880,000 | 694,000,000   | 69,400,000  | 69,400,000      | 555,200,000 |
| 59A  | 102동 4호,<br>103동 1호, 2호,<br>104동 4호, 5호,<br>108~115동 4호, 5호,<br>116동 3호, 4호,<br>120동 4호, 5호,<br>121동 1호, 2호, 4호 | 1층     | 8   | 357,120,000 | 386,880,000 | 744,000,000   | 74,400,000  | 74,400,000      | 595,200,000 |
|      |   | 2층     | 19  | 366,720,000 | 397,280,000 | 764,000,000   | 76,400,000  | 76,400,000      | 611,200,000 |
|      |   | 3층     | 28  | 374,400,000 | 405,600,000 | 780,000,000   | 78,000,000  | 78,000,000      | 624,000,000 |
|      |   | 4~5층   | 53  | 379,680,000 | 411,320,000 | 791,000,000   | 79,100,000  | 79,100,000      | 632,800,000 |
|      |   | 6~19층  | 320 | 383,520,000 | 415,480,000 | 799,000,000   | 79,900,000  | 79,900,000      | 639,200,000 |
|      |   | 20~29층 | 68  | 385,440,000 | 417,560,000 | 803,000,000   | 80,300,000  | 80,300,000      | 642,400,000 |
|      |   | 30층 이상 | 27  | 387,840,000 | 420,160,000 | 808,000,000   | 80,800,000  | 80,800,000      | 646,400,000 |
| 59B  | 101~102동 3호,<br>104동 2호,<br>106~107동 2호,<br>114~117동 2호,<br>120동 2호,<br>121동 3호                                 | 1층     | 3   | 357,120,000 | 386,880,000 | 744,000,000   | 74,400,000  | 74,400,000      | 595,200,000 |
|      |   | 2층     | 11  | 366,720,000 | 397,280,000 | 764,000,000   | 76,400,000  | 76,400,000      | 611,200,000 |
|      |   | 3층     | 11  | 374,400,000 | 405,600,000 | 780,000,000   | 78,000,000  | 78,000,000      | 624,000,000 |
|      |   | 4~5층   | 20  | 379,680,000 | 411,320,000 | 791,000,000   | 79,100,000  | 79,100,000      | 632,800,000 |
|      |   | 6~19층  | 145 | 383,520,000 | 415,480,000 | 799,000,000   | 79,900,000  | 79,900,000      | 639,200,000 |
|      |   | 20~29층 | 78  | 385,440,000 | 417,560,000 | 803,000,000   | 80,300,000  | 80,300,000      | 642,400,000 |
|      |   | 30층 이상 | 43  | 387,840,000 | 420,160,000 | 808,000,000   | 80,800,000  | 80,800,000      | 646,400,000 |
| 59C  | 101동 1호,<br>106~107동 4호   | 2층     | 3   | 366,720,000 | 397,280,000 | 764,000,000   | 76,400,000  | 76,400,000      | 611,200,000 |
|      |   | 3층     | 3   | 374,400,000 | 405,600,000 | 780,000,000   | 78,000,000  | 78,000,000      | 624,000,000 |
|      |   | 4~5층   | 6   | 379,680,000 | 411,320,000 | 791,000,000   | 79,100,000  | 79,100,000      | 632,800,000 |
|      |   | 6~19층  | 42  | 383,520,000 | 415,480,000 | 799,000,000   | 79,900,000  | 79,900,000      | 639,200,000 |
| 72   | 101동 2호, 4호,<br>102동 1호, 2호,<br>106~107동 3호,<br>117동 4호, 5호,<br>119동 1호, 2호                                     | 2층     | 10  | 456,960,000 | 495,040,000 | 952,000,000   | 95,200,000  | 95,200,000      | 761,600,000 |
|      |   | 3층     | 10  | 466,560,000 | 505,440,000 | 972,000,000   | 97,200,000  | 97,200,000      | 777,600,000 |
|      |   | 4~5층   | 18  | 473,280,000 | 512,720,000 | 986,000,000   | 98,600,000  | 98,600,000      | 788,800,000 |
|      |   | 6~19층  | 91  | 478,560,000 | 518,440,000 | 997,000,000   | 99,700,000  | 99,700,000      | 797,600,000 |
|      |   | 20~29층 | 16  | 481,440,000 | 521,560,000 | 1,003,000,000 | 100,300,000 | 100,300,000     | 802,400,000 |
|      |   | 30층 이상 | 7   | 484,320,000 | 524,680,000 | 1,009,000,000 | 100,900,000 | 100,900,000     | 807,200,000 |
| 84A  | 104동 1호, 3호,<br>106~107동 1호,<br>108~115동 1호, 3호,<br>116동 1호,<br>117동 1호, 3호,<br>120동 3호                         | 1층     | 6   | 486,240,000 | 526,760,000 | 1,013,000,000 | 101,300,000 | 101,300,000     | 810,400,000 |
|      |   | 3층     | 19  | 509,280,000 | 551,720,000 | 1,061,000,000 | 106,100,000 | 106,100,000     | 848,800,000 |
|      |   | 4~5층   | 5   | 514,560,000 | 557,440,000 | 1,072,000,000 | 107,200,000 | 107,200,000     | 857,600,000 |
| 84B  | 108~113동 2호   | 1층     | 4   | 486,240,000 | 526,760,000 | 1,013,000,000 | 101,300,000 | 101,300,000     | 810,400,000 |
|      |   | 2층     | 6   | 498,720,000 | 540,280,000 | 1,039,000,000 | 103,900,000 | 103,900,000     | 831,200,000 |
|      |   | 3층     | 6   | 509,280,000 | 551,720,000 | 1,061,000,000 | 106,100,000 | 106,100,000     | 848,800,000 |
|      |   | 4~5층   | 10  | 514,560,000 | 557,440,000 | 1,072,000,000 | 107,200,000 | 107,200,000     | 857,600,000 |

**[변경 후]**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 (10%)<br>자납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36   | 123동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 6~19층  | 24  | 232,934,400 | 252,345,600 | 485,280,000 | 48,528,000 | 48,528,000      | 388,224,000 |
| 46   | 118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4~5층   | 11  | 294,192,000 | 318,708,000 | 612,900,000 | 61,290,000 | 61,290,000      | 490,320,000 |
|      |                              | 6~19층  | 72  | 297,000,000 | 321,750,000 | 618,750,000 | 61,875,000 | 61,875,000      | 495,000,000 |
|      |                              | 20~29층 | 7   | 299,808,000 | 324,792,000 | 624,600,000 | 62,460,000 | 62,460,000      | 499,680,000 |
| 59A  | 102동 4호,<br>103동 1호, 2호,     | 1층     | 8   | 321,408,000 | 348,192,000 | 669,600,000 | 66,960,000 | 66,960,000      | 535,680,000 |
|      |                              | 2층     | 19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 (10%)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자납<br>(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 104동 4호, 5호,<br>108~115동 4호, 5호,<br>116동 3호, 4호<br>120동 4호, 5호,<br>121동 1호, 2호, 4호 | 3층          | 28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53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320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6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  | 30층 이상      | 27  | 349,056,000 | 378,144,000 | 727,200,000 | 72,720,000  | 72,720,000         | 581,760,000 |
| 59B  | 101~102동 3호,<br>104동 2호,<br>106~107동 2호,<br>114~117동 2호,<br>120동 2호,<br>121동 3호    | 1층          | 3   | 321,408,000 | 348,192,000 | 669,600,000 | 66,960,000  | 66,960,000         | 535,680,000 |
|      |  | 2층          | 11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  | 3층          | 11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20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145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7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  | 30층 이상      | 43  | 349,056,000 | 378,144,000 | 727,200,000 | 72,720,000  | 72,720,000         | 581,760,000 |
| 59C  | 101동 1호,<br>106~107동 4호  | 2층          | 3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  | 3층          | 3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6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42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1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72   | 101동 2호, 4호,<br>102동 1호, 2호,<br>106~107동 3호,<br>117동 4호, 5호,<br>119동 1호, 2호        | 2층          | 10  | 411,264,000 | 445,536,000 | 856,800,000 | 85,680,000  | 85,680,000         | 685,440,000 |
|      |  | 3층          | 10  | 419,904,000 | 454,896,000 | 874,800,000 | 87,480,000  | 87,480,000         | 699,840,000 |
|      |  | 4~5층        | 18  | 425,952,000 | 461,448,000 | 887,400,000 | 88,740,000  | 88,740,000         | 709,920,000 |
|      |  | 6~19층       | 91  | 430,704,000 | 466,596,000 | 897,300,000 | 89,730,000  | 89,730,000         | 717,840,000 |
|      |  | 20~29층      | 16  | 433,296,000 | 469,404,000 | 902,700,000 | 90,270,000  | 90,270,000         | 722,160,000 |
|      |  | 30층 이상      | 7   | 435,888,000 | 472,212,000 | 908,100,000 | 90,810,000  | 90,810,000         | 726,480,000 |
|      |  | 84A         | 104동 1호, 3호,<br>106~107동 1호,<br>108~115동 1호, 3호,<br>116동 1호,<br>117동 1호, 3호,<br>120동 3호 | 1층          | 6           | 437,616,000 | 474,084,000 | 911,700,000        | 91,170,000  |
| 3층   | 19   | 458,352,000 | 496,548,000   | 954,900,000 | 95,490,000  | 95,490,000  | 763,920,000 |                    |             |
| 4~5층 | 5  | 463,104,000 | 501,696,000   | 964,800,000 | 96,480,000  | 96,480,000  | 771,840,000 |                    |             |
| 84B  | 108~113동 2호  | 1층          | 4   | 437,616,000 | 474,084,000 | 911,700,000 | 91,170,000  | 91,170,000         | 729,360,000 |
|      |  | 2층          | 6   | 448,848,000 | 486,252,000 | 935,100,000 | 93,510,000  | 93,510,000         | 748,080,000 |
|      |  | 3층          | 6   | 458,352,000 | 496,548,000 | 954,900,000 | 95,490,000  | 95,490,000         | 763,920,000 |
|      |  | 4~5층        | 10  | 463,104,000 | 501,696,000 | 964,800,000 | 96,480,000  | 96,480,000         | 771,840,000 |

■ (27 page)

[변경 전]

| 구분     |      |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 서류 제출 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 특별공급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04일(토)<br>10:00 ~ 16:00 | -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br>(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 )<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사전방문예약제 |
|        | 일반공급 |  |   |           |
| 예비 당첨자 | 특별공급 |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   |           |
|        | 일반공급 |  |   |           |

[변경 후]

| 구분     |      |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 서류 제출 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 특별공급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10일(금)<br>10:00 ~ 16:00 | -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br>(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 )<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        | 일반공급 |  |   |    |
| 예비 당첨자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33 page)

[변경 전]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비고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3년 02월 06일(월) ~ 02월 10일(금)<br>10:00 ~ 16:00 | 주택전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00-41) | 사전방문 예약제 |

[변경 후]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비고 |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3년 02월 13일(월) ~ 02월 17일(금)<br>10:00 ~ 16:00 | 주택전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00-41) | -  |                  |
| 예비 당첨자 추천 | 특별공급   |                            |    | 2023년 02월 18일(토) |
|           | 일반공급   |                            |    | 2023년 02월 19일(일) |

■ 표기 오류 삭제(36 page)

[정정 전]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사후) 또는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정 후]

- 삭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2.12.29.)에 따른 평촌 센텀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 2,4,6,20 page

■ (2,6 page)

- 변경 전 : 2022.02.28. 시행
- 변경 후 : 2022.12.29. 시행

■ (4 page)

- 변경 전 :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변경 후 :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20 page)

- 변경 전 :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변경 후 :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3층, 최고층수 38층, 23개동 총 2,886세대 중 일반분양(후분양) 1,228세대 공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 「평촌 센텀퍼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과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http://www.elife.co.kr))을 동시 운영할 예정이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주택전시관 운영관련 안내
  - 주택전시관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 관련 상담은 상담전화(☎031-342-2886)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주택전시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전시관 운영,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내방객 관람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등에 따라 주택전시관의 일일 내방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 및 당첨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주택전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주택전시관 내방 예약일정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031-342-2886)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시행자인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체 제작한 브랜드인 '평촌 센텀퍼스트'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단지이며,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도급공사계약상 시공사로서 참여할뿐 '평촌 센텀퍼스트'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와 관련하여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 본 단지의 계약자는 계약이후 시공사의 브랜드인 e편한세상, 하늘재 브랜드 명칭 및 로고, 컬러, 사이니지 등 브랜드 고유 자산 일체를 본 단지에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9.)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1.12.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안양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단,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2순위)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O              | O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안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 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안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며,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01.17.)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 등 세제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

- 세액(기재금액 기준)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br>(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                           |   |  |                               |
| 일정 | 2023년 01월 09일(월)   |  | 2023년 01월 10일(화)   | 2023년 01월 11일(수)          | 2023년 01월 17일(화)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10일(금)  | 2023년 02월 13일(월) ~ 02월 17일(금) |
| 방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 ~ 16:00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li> <li>-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참방문)</li> </ul>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전시관</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방문</li> <li>주택전시관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li> </ul>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당일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발코니 확장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용 36㎡/46㎡는 거실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1대 설치, 전용59㎡/72㎡/84㎡는 거실/침실1/침실2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3대 설치), 침실 불박이장 1개(전용36㎡/59㎡/72㎡/84㎡에 한함)는 추가선택품목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이외의 빌트인 가전 등의 추가선택품목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 12. 2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2051호 (2023. 02.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3층, 최고층수 38층, 23개동 총 2,886세대 중 후분양 1,228세대

후분양 1,228세대 [특별공급 627세대(일반[기관추천] 116세대, 다자녀가구 116세대, 신혼부부 242세대, 노부모부양 32세대, 생애최초 12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              | 계  |
| 민영 주택 | 2022000908 | 01 | 036.9645     | 36   | 36.9645   | 19.2316 | 56.1961  | 30.2402          | 86.4363  | 19.9167  | 24      | 2        | -      | 4     | -      | 2     | 8         | 16           | -  |
|       |            | 02 | 046.6460     | 46   | 46.6460   | 20.6498 | 67.2958  | 38.1605          | 105.4563 | 23.8505  | 90      | 9        | 8      | 18    | 2      | 9     | 46        | 44           | -  |
|       |            | 03 | 059.9970A    | 59A  | 59.9970   | 22.7691 | 82.7661  | 49.0829          | 131.8490 | 29.3334  | 523     | 52       | 52     | 104   | 15     | 52    | 275       | 248          | 19 |
|       |            | 04 | 059.7995B    | 59B  | 59.7995   | 23.5451 | 83.3446  | 48.9212          | 132.2658 | 29.5385  | 311     | 31       | 30     | 62    | 9      | 31    | 163       | 148          | 11 |
|       |            | 05 | 059.8462C    | 59C  | 59.8462   | 23.5530 | 83.3992  | 48.9593          | 132.3585 | 29.5578  | 72      | 7        | 7      | 14    | 2      | 7     | 37        | 35           | 3  |
|       |            | 06 | 072.9824     | 72   | 72.9824   | 24.5918 | 97.5742  | 59.7060          | 157.2802 | 34.5816  | 152     | 15       | 15     | 30    | 4      | 15    | 79        | 73           | 10 |
|       |            | 07 | 084.9122A    | 84A  | 84.9122   | 25.1543 | 110.0665 | 69.4656          | 179.5321 | 39.0090  | 30      | -        | 2      | 6     | -      | 3     | 11        | 19           | 6  |
|       |            | 08 | 084.5250B    | 84B  | 84.5250   | 25.6901 | 110.2151 | 69.1489          | 179.3640 | 39.0617  | 26      | -        | 2      | 4     | -      | 2     | 8         | 18           | 6  |
| 합 계   |            |    |              |      |           |         |          |                  |          |          | 1,228   | 116      | 116    | 242   | 32     | 121   | 627       | 601          | 55 |

■ 유의사항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2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공급(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대지지분 오차는 일반분양 동호수 세대중에서 맨 마지막 동호수 세대에 임의 할당하였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 (10%)<br>자납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36   | 123동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 6~19층  | 24  | 232,934,400 | 252,345,600 | 485,280,000 | 48,528,000 | 48,528,000      | 388,224,000 |
| 46   | 118동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4~5층   | 11  | 294,192,000 | 318,708,000 | 612,900,000 | 61,290,000 | 61,290,000      | 490,320,000 |
|      |  | 6~19층  | 72  | 297,000,000 | 321,750,000 | 618,750,000 | 61,875,000 | 61,875,000      | 495,000,000 |
|      |  | 20~29층 | 7   | 299,808,000 | 324,792,000 | 624,600,000 | 62,460,000 | 62,460,000      | 499,680,000 |
| 59A  | 102동 4호,<br>103동 1호, 2호,<br>104동 4호, 5호,<br>108~115동 4호, 5호,<br>116동 3호, 4호<br>120동 4호, 5호,<br>121동 1호, 2호, 4호 | 1층     | 8   | 321,408,000 | 348,192,000 | 669,600,000 | 66,960,000 | 66,960,000      | 535,680,000 |
|      |  | 2층     | 19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  | 3층     | 28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53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320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6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  | 30층 이상 | 27  | 349,056,000 | 378,144,000 | 727,200,000 | 72,720,000 | 72,720,000      | 581,760,000 |
| 59B  | 101~102동 3호,<br>104동 2호,<br>106~107동 2호,<br>114~117동 2호,<br>120동 2호,<br>121동 3호                                | 1층     | 3   | 321,408,000 | 348,192,000 | 669,600,000 | 66,960,000 | 66,960,000      | 535,680,000 |
|      |  | 2층     | 11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  | 3층     | 11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20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145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7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  | 30층 이상 | 43  | 349,056,000 | 378,144,000 | 727,200,000 | 72,720,000 | 72,720,000      | 581,760,000 |
| 59C  | 101동 1호,<br>106~107동 4호  | 2층     | 3   | 330,048,000 | 357,552,000 | 687,600,000 | 68,760,000 | 68,760,000      | 550,080,000 |
|      |  | 3층     | 3   | 336,960,000 | 365,040,000 | 702,000,000 | 70,200,000 | 70,200,000      | 561,600,000 |
|      |  | 4~5층   | 6   | 341,712,000 | 370,188,000 | 711,900,000 | 71,190,000 | 71,190,000      | 569,520,000 |
|      |  | 6~19층  | 42  | 345,168,000 | 373,932,000 | 719,100,000 | 71,910,000 | 71,910,000      | 575,280,000 |
|      |  | 20~29층 | 18  | 346,896,000 | 375,804,000 | 722,700,000 | 72,270,000 | 72,270,000      | 578,160,000 |
| 72   | 101동 2호, 4호,<br>102동 1호, 2호,<br>106~107동 3호,<br>117동 4호, 5호,<br>119동 1호, 2호                                    | 2층     | 10  | 411,264,000 | 445,536,000 | 856,800,000 | 85,680,000 | 85,680,000      | 685,440,000 |
|      |  | 3층     | 10  | 419,904,000 | 454,896,000 | 874,800,000 | 87,480,000 | 87,480,000      | 699,840,000 |
|      |  | 4~5층   | 18  | 425,952,000 | 461,448,000 | 887,400,000 | 88,740,000 | 88,740,000      | 709,920,000 |
|      |  | 6~19층  | 91  | 430,704,000 | 466,596,000 | 897,300,000 | 89,730,000 | 89,730,000      | 717,840,000 |
|      |  | 20~29층 | 16  | 433,296,000 | 469,404,000 | 902,700,000 | 90,270,000 | 90,270,000      | 722,160,000 |
|      |  | 30층 이상 | 7   | 435,888,000 | 472,212,000 | 908,100,000 | 90,810,000 | 90,810,000      | 726,480,000 |

| 약식표기 | 동(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 (10%)<br>자납 | 잔금(8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 시)     | (2023.06.26)    | 입주지정기간      |
| 84A  | 104동 1호, 3호,<br>106~107동 1호,<br>108~115동 1호, 3호,<br>116동 1호,<br>117동 1호, 3호,<br>120동 3호 | 1층   | 6   | 437,616,000 | 474,084,000 | 911,700,000 | 91,170,000 | 91,170,000      | 729,360,000 |
|      |   | 3층   | 19  | 458,352,000 | 496,548,000 | 954,900,000 | 95,490,000 | 95,490,000      | 763,920,000 |
|      |   | 4~5층 | 5   | 463,104,000 | 501,696,000 | 964,800,000 | 96,480,000 | 96,480,000      | 771,840,000 |
| 84B  | 108~113동 2호   | 1층   | 4   | 437,616,000 | 474,084,000 | 911,700,000 | 91,170,000 | 91,170,000      | 729,360,000 |
|      |   | 2층   | 6   | 448,848,000 | 486,252,000 | 935,100,000 | 93,510,000 | 93,510,000      | 748,080,000 |
|      |   | 3층   | 6   | 458,352,000 | 496,548,000 | 954,900,000 | 95,490,000 | 95,490,000      | 763,920,000 |
|      |   | 4~5층 | 10  | 463,104,000 | 501,696,000 | 964,800,000 | 96,480,000 | 96,480,000      | 771,84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후분양 사업지 특성상 중도금 대출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으며, 중도금 10%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상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발코니 확장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전용 36㎡/46㎡는 거실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1대 설치, 전용59㎡/72㎡/84㎡는 거실/침실1/침실2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3대 설치), 침실 불박이장 1개(전용36㎡/59㎡/72㎡/84㎡에 한함)는 추가선택품목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이외의 빌트인 가전 등의 추가선택품목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요,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민간택지에 후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가 후분양 아파트라고 하여 사업주체가 별도 통보하는 사전점검을 제외하고는 분양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아파트 내·외부 확인을 위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약식표기)        |                        | 36       | 46        | 59A        | 59B        | 59C       | 72        | 84A       | 84B      | 합 계        |    |
|-------------------|------------------------|----------|-----------|------------|------------|-----------|-----------|-----------|----------|------------|----|
| 일반 (기관추천)<br>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 2         | 9          | 5          | 2         | 3         | -         | -        | 21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1         | 6          | 4          | 1         | 2         | -         | -        | 14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6          | 4          | 1         | 2         | -         | -        | 14         |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3          | 2          | -         | 1         | -         | -        | 7          |    |
|                   | 도시재생부지제공자              | -        | -         | 1          | 1          | -         | 1         | -         | -        | 3          |    |
|                   | 장애인                    | 경기도      | 2         | 2          | 13         | 8         | 1         | 2         | -        | -          | 28 |
|                   |                        | 서울특별시    | -         | 1          | 9          | 5         | 1         | 2         | -        | -          | 18 |
| 인천광역시             |                        | -        | 1         | 5          | 2          | 1         | 2         | -         | -        | 11         |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 (50%)          | -        | 4         | 26         | 15         | 4         | 8         | 1         | 1        | 59         |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        | 4         | 26         | 15         | 3         | 7         | 1         | 1        | 57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4        | 18        | 104        | 62         | 14        | 30        | 6         | 4        | 242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2         | 15         | 9          | 2         | 4         | -         | -        | 32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2        | 9         | 52         | 31         | 7         | 15        | 3         | 2        | 121        |    |
| <b>합 계</b>        |                        | <b>8</b> | <b>46</b> | <b>275</b> | <b>163</b> | <b>37</b> | <b>79</b> | <b>11</b> | <b>8</b> | <b>627</b>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 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li>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86 1273 2092 1425"> <thead> <tr> <th>구분</th> <th>안양시 및 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 구분      | 안양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만원 |
| 구분                      | 안양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남부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
- 도시재생부지제공자 :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하였을 때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전혼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주택행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1.12.29.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에게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때에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r>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4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2022. 12. 29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br>(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br>7,450,721원   | 7,200,810원~<br>8,640,971원  | 7,326,073원~<br>8,791,286원  | 7,779,826원~<br>9,335,790원  | 8,233,579원~<br>9,880,294원  | 8,687,332원~<br>10,424,797원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br>8,692,508원   | 7,200,810원~<br>10,081,133원 | 7,326,073원~<br>10,256,501원 | 7,779,826원~<br>10,891,755원 | 8,233,579원~<br>11,527,009원 | 8,687,332원~<br>12,162,263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br>9,934,294원   | 8,640,972원~<br>11,521,294원 | 8,791,287원~<br>11,721,715원 | 9,335,791원~<br>12,447,720원 | 9,880,295원~<br>13,173,725원 | 10,424,798원~<br>13,899,730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br>(추첨제, 30%)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p>-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p> <p>-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p> |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자격요건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에 해당하는 자(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요건 :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경과)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소형·저가주택등' 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자. 1인 가구는 추정제외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2022. 12. 29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br>기준<br>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br>~9,934,294원   | 9,361,053원<br>~11,521,294원 | 9,523,895원<br>~11,721,715원 | 10,113,774원<br>~12,447,720원 | 10,703,652원<br>~13,173,725원 | 11,293,531원<br>~13,899,730원 |              |
| 추첨제<br>(30%)   | 1인 가구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b>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b>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9) 현재 경기도 안양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청약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가 되는 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정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60%)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안양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만원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3.01.09(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안양시 호계동 1000-41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2023.01.10(화) 09:00~17: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2순위                                | 2023.01.11(수) 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PC 청약시]   |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서,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에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 구 분                     | 내 용  |
|-------------------------|--|
| ①무주택기간<br>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
| ②부양가족의 인정<br>적용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li>※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ul> </li> <li>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li> </ul> </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ol> |
| ③입주자지속<br>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주택소유여부 및<br>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

- ※ 제 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6호에 의거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 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됨.

**V** **당첨자 발표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당첨자 발표**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01.17(화)</li> <li>• 확인방법<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 일반공급 | 1순위<br>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쑈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3.01.17 (화) ~ 2023.01.26. (목)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3.01.1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안양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li> </ul> |

|      |  |
|------|--|
|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 구분     |      |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 서류 제출 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 특별공급 | 2023년 01월 25일(수)~02월 10일(금)<br>10:00 ~ 16:00 | -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br>(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1 )<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        | 일반공급 |  |   |    |
| 예비 당첨자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특별<br>공급<br>공통<br>서류  | ○    |     | ① 특별공급신청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제출)</li> <li>인터넷청약[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li> <li>'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③ 무주택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⑤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li> </ul>  |
|                       | ○    |     |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                       | ○    |     | ⑦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ul>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⑨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
|                       | ○    |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li> </ul>   |
|                       | ○    |     | ⑫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                       | ○    |     | ⑬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li> <li>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li> <li>*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li> <li>*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li> </ul> |
|                       | ○    |     | 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⑮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li> </ul>  |
|                       | ○    |     | ⑯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기관<br>추천              | ○    |     | ①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li> <li>'청약Home'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다자녀<br>가구<br>특별<br>공급 | ○    |     | ①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li> <li>'청약Home'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다자녀<br>가구<br>특별<br>공급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또는<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li>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⑤ 임신진단서 또는<br>출생증명서        | 배우자<br>또는<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제출<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본인<br>또는<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입양인 경우</li> </ul>   |
|                       |      | ○   | ⑧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⑨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신혼<br>부부<br>특별<br>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br>또는<br>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br>출산증명서       | 본인<br>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제출<br/>-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                       |      | ○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br>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                       |      | ○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br>확인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⑥ 소득증빙 서류<br><표2> 참고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
|                       | ○    |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된 세대원 포함)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
|                       |      | ○   | ⑧ 비사업자 확인각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ul>   |
|                       |      | ○   | ⑨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
| 노부모<br>부양<br>특별<br>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li> </ul>  |
|                       | ○    |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ul>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노부모<br>부양<br>특별<br>공급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br>*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 생애<br>최초<br>특별<br>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br>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④ 소득증빙 서류<br><표2> 참고    | 본인 및<br>만 19세<br>이상<br>세대원  |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 ○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br>-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      | ○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⑦ 소득세납부 입증서류<br><표3> 참고 | 본인  |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⑧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사항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급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으로 합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자료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제출         | ① 해당직장<br>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br>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③ 해당직장<br>④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청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br>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br>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① 세무서<br>② 등기소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br>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br>※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 ① 국민연금공단<br>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① 국민연금공단<br>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br>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br>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br>② 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br>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① 주택전시관<br>② 세무서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중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의 경우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 9조(소득기준 심사방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록증 제출로서 증빙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서류제출  | 발급처                           |
|-----------|--|---|-------------------------------|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br>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 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부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입증서류 |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br>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br>② 해당직장<br>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 유형 | 해당 서류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                            |                    |   |
| 공통 서류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               |       | ○              | ⑧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br>-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br>-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br>-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 ⑨ 출입국사실증명서                 | 세대원                |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br>-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br>-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br>-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               |       | ○              | ⑩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⑪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상세”로 발급<br>•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정 시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                          |   |               |                 |                             |   |
|--------------------------|---|---------------|-----------------|-----------------------------|---|
| 당첨<br>예비<br>입주자          |   | ○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가족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ul>   |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br>부양가족<br>산정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ul> |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 제3자<br>대리인<br>신청 시<br>추가 | ○ |               | ②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li> </ul>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Ⅶ

###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비고 |                  |
|-----------|---|----------------------------|----|------------------|
| 당첨자 계약체결  | 2023년 02월 13일(월) ~2023년 02월 17일(금)<br>10:00 ~ 16:00 | 주택전시관(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00-41) |    |                  |
| 예비 당첨자 추첨 | 특별공급  |                            |    | 2023년 02월 18일(토) |
|           | 일반공급  |                            |    | 2023년 02월 19일(일)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
| 분양대금 | 하나은행  | 219-910029-97804 |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계약자는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 '1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사업지는 중도금 대출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으며, 중도금 10%는 납부기일내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①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②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④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 ○    |     | ⑤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⑥ 전자수입인지                          | 본인   | • 수입인지사이트 (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br>- 1억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br>- 10억원 초과 : 35만원 |
|         |      | ○   | ⑦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⑧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대리인 계약시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②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입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봄.(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관련 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서 종이문서용으로 발급 또는 취급 금융기관(우체국, 은행등)에 방문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가능 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으로 구입하여야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당사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인계하는 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저가주택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 경합 시  | 주택수 | 적용 기준                     |
|--|-----|---------------------------|
| ① 제53조 각 호(제5호, 제9호 제외) + ②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   | 모두 적용                     |
| ① 제53조 각 호(제5호, 제9호 제외) + ② 제5호(20㎡ 이하)                            | 1   | 5호 미적용 적용                 |
| ① 제53조 제5호(20㎡ 이하) + ②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1호                             | 2   | 5호 미적용 적용 및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 ① 제53조 각 호(제5호, 제9호 제외) + ②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1호                        | 1   |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 ① 제53조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 2   |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 ①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②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 ③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1   |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인정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Ⅷ

###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타입)    | 36        | 46         | 59A        | 59B        | 59C        | 72         | 84A        | 84B        | 비고         |
|------------|-----------|------------|------------|------------|------------|------------|------------|------------|------------|
| 발코니 확장     | 7,700,000 | 11,400,000 | 12,500,000 | 14,200,000 | 14,500,000 | 14,100,000 | 16,600,000 | 14,600,000 |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2,400,000 | 2,400,000  | 6,700,000  | 6,700,000  | 6,700,000  | 7,300,000  | 7,700,000  | 7,700,000  | 제조사 : LG전자 |
| 불박이장       | 700,000   | 미설치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900,000    | -          |

■ 본 아파트는 공정을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발코니 확장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전용 36㎡/46㎡는 거실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1대 설치, 전용59㎡/72㎡/84㎡는 거실/침실1/침실2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3대 설치), 침실 불박이장 1개(전용36㎡/59㎡/72㎡/84㎡에 한함)는 추가선택품목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이외의 빌트인 가전 등의 추가선택품목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 무상으로 공급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이외에 계약자가 추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침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잔금 납부 후에 설치공사를 할 수 있으며, 시공사가 단위 세대당 기본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유무와 실외기 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 36㎡] : 거실/침실1에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 침실2에 벽체형 냉매배관 설치, 실외기 용량은 거실/침실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대분 용량만 공급함.
- [전용 46㎡] : 거실에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 침실1에 벽체형 냉매배관이 설치됨. 실외기 용량은 거실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대분 용량만 공급함.
- [전용 59㎡/72㎡/84㎡]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에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됨. 실외기 용량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총 4대분의 실외기 용량을 공급함.
- 상기 기본제공 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이외에 계약자가 추가로 침실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시, 그에 따른 냉매배관 및 실외기, 실외기전원 또한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 IX

## 기타 사항

##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양반,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 GX룸,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다목적체육관, 가족운동실, 사우나, 라운지카페, 실내놀이터,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테디룸, 방과후교실,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내진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Ⅵ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169g입니다.

##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비고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
|-----------------------------|--------------------------------------|------|--|
| 건축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 설치   |
| 기계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br>(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설계용 외기조건을 정하는 바에 따름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br>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함 |
|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
| 전기부분 설계기준<br>(제7조 제 3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12022-101-0008000 호 | 201,314,960,0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약관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
|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금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
|--|
|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
|---|
|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자연으로 납부한 자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흙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X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사업지 남측의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3호, 2021. 11.02)로 승인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2027년 개통 추진될 예정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개통시기 및 출입구는 변동될 수 있음. 평촌 선템퍼스트의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홍보물에 표현된 호계사거리역 위치 표기의 출처는 국가철도공단(www.kr.or.kr) 홈페이지내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지하역사 설계공모 공고문 中 103역사 설계 위치를 참고하여 표기한 것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주체 및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계획 변경에 따라 역의 위치 및 출입구는 변동 될 수 있음.
- 사업지 서측 직선거리 약 2Km 거리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금정역이 2028년 개통 추진예정이며, 북동측 직선거리 약4Km 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역이 2026년 개통 추진 예정으로 광고홍보물에 표기하였으나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지 서측에는 호계종합시장이, 남측 흥안대로 건너편에는 안양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동의 세대들은 환경권, 조망권, 소음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계약전에 현장을 방문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이후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 흥안대로변으로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종교시설, 주차장이 위치함.
- 본 단지 내에는 118동, 122동 123동에 임대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지구내 건축시설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호계시장과 덕현초교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에 입주자 임의로 펜스설치는 불가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기타 외부인의 통행 등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여건

- ※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장소를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판상형 주동(122동, 123동)의 복도 천장에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복도 외부에 창호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내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광장,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DA), 전기실, 재활용품보관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웨더스테이션, 유치원, 근린생활시설1,2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 있으니 계약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사업승인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1,2, 재활용품보관소, 쓰레기 분리 보관소, 경로당, 유치원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 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옥상장식물, 외부색채, 내부부 마감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물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 공용부,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근생시설, 옥외시설물, 포장계획, 식재계획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지하1,2층 및 지상1층 부대복리시설, 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1,2, 유치원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후면 및 바닥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과 발코니의 단차는 침실, 주방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 지상 1, 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생안테나(115동), 피뢰침, 태양광판발,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광조명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 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외벽줄눈,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상 1층에 동별 1개소가 설치되며, 한쪽 동호수 라인에 치우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거실 및 침실 등은 유리난간이 있는 창문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량으로 인한 운반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리난간이 있는 창문으로 이삿짐 운반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손 등은 하자처리범위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지상 주차장은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시설이며, 일부 지상부 주차장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외벽 마감은 지정 석재 및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되며, 101, 102, 103, 104동 일부 벽체는 커튼월벽으로 시공됩니다.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1개층, 2개층 필로티로 다르게 위치하고 있으며, 110동, 114동, 115동에는 단차구간으로 지하1층에 필로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1,2가 계획되어 있으며 출입구 별 경비실 1개소로 총 3개소 배치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별 2개소 안전매트설치구간 관련 안내표지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의 식재계획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정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정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빗물 재활용을 위한 빗물처리시설 및 빗물저류조와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어, 빗물 이송을 위한 펌프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원부지는 공동주택과 별도 준공으로 입주후 공원부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 공원부지와 공동주택 경계에는 공동주택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추후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 본 아파트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 제공 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워셔드기 등과 같은 붙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외기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와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두께 및 재질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개방시 해당층 및 하부층, 관리사무소에 경고음이 작동하오니 사전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별도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세대별 단차로 같은 타입세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풍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함.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함.
- 세대 내 창문 인근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는 1,2(피로티포함) 및 최상층 세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설치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음.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장소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센터 및 자재창고를 110동 지하1층 PIT 112동 지하2층 PIT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에 있는 창고는 입주자들을 위한 CS자재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사용기간 변동 가능) 민원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 견본주택 내 스프링쿨러 및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에는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미건립 세대 59㎡C, 72㎡, 84㎡B 타입은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마감 자재와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 ※ 미건립 세대 36㎡, 46㎡ 타입의 일부 마감재(주방가구 도어, 주방가구 상판, 현관 바닥 타일 및 디딤판, 욕실 선반, 목창호 스위트, 발코니 도장 등)는 주택전시관 건립 세대와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주택전시관 내부에 설치한 마감재 샘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CG 이미지는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시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장소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사오니 계약예정자는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워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101동 지하2층 열교환기실, 112동, 113동 지하2층 주변 발전기실, 전기실, 열교환기실, 113동 지하3층 저수조, 소화수조, 펌프실(기계실), 116동 지하3층 발전기실, 전기실, 열교환기실, 120동 지하3층 빗물저류조,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저층 및 고층 일부 세대 수도 계량기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인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평촌 센텀퍼스트' BI 옥외광고물은 문주, 102동, 103동, 104동, 107동, 118동, 120동 측벽에 설치예정이며, 향후 인허가청 심의예정으로 인허가에 따라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단지배치

- ※ 본 단지 내에는 118동, 122동 123동에 임대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유치원, 근린생활시설1,2,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 스카이 브릿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주동

-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등은 등은 인허가, 심의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113동 지하1층에는 에듀센터가 위치하여 소음 등 환경 및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7동과 119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소음 등 환경 및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6동 1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여 소음 등 환경 및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07동, 112동, 113동 지상1~2층에는 유치원이 위치하여 소음 등 환경 및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4동 지하1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여 소음 등 환경 및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10동, 115동 지하1,2층에는 커뮤니티센터와 관리사무소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는 5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유치원 부속놀이터 1개소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서로 상이합니다.
-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웨더 스테이션용 안테나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며 시공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예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주동 지붕에 설치되며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태양광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8동, 109동, 111동, 114동, 115동, 116동, 120동 옥상
-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113동, 115동, 117동, 120동, 122동
  -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①옥상층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7동, 109동, 111동, 113동, 115동, 117동, 120동, 122동 ②지하1층 104동, 106동, 110동, 112동 PIT ③지하2층 104동, 106동, 110동, 112동, 116동, 118동 PIT, 지하3층 104동, 106동, 110동, 112동, 116동, 118동 PIT
- ※ 실외 노출 복도(122동, 123동 복도 포함)에는 외부창호 및 별도 천정마감이 설치되지 않으며,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일부세대의 오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106동 지하1층 열교환실에는 지열시스템의 기계실이 설치되며,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10동 옥탑층에는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됩니다.
- ※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에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서의 사우나 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사우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사우나시설 상부에는 사우나 배기용 배기구(DA)가 설치되며, 사우나 운영 시 취기 및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발코니 확장 시 사시창은 이중 창호[PL 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36타입, 46타입 외부 노출 발코니에는 철제 난간 대가 설치되고, 59, 72, 84, 99타입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입면이 상이합니다.
- ※ 59B타입은 동 배치로 인하여 현관문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72, 84A, 84B 코너선반은 허용적재하중을 초과 시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세대별 단차로 인하여 비확장은 없습니다.
-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텐박스의 크기,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청약 혹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탁기,건조기는 보조주방 출입문 규격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라인별 최하층 세대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가 내려오는 곳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는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 본 단지는 세대 내부에 기본적으로 하향식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세대(필로티 상부세대 포함)는 설치 제외됩니다.
-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차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스위치, 콘센트, 월 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주방상부장 조명의 터치형센서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 분양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 분양 사인물, CG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색채와 마감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구, 주방아일랜드장,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불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후면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단독으로 설치되는 주방아일랜드장의 위치 이동에 따라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 목재도어(침실 및 욕실), 가구 및 복도 패널 등의 인테리어 마감은 자재 특성 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창호 및 PL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톱퍼, 등)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아트월, 주방 타일 및 엔지니어드 스톤,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일반 가구류(화장대, 시스템선반, 불박이장)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창 부위는 마감공사로 인해 PVC 몰딩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아일랜드장 포함)의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 할수 있습니다.
-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후면의 턱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악세서리 중 일부는 (식기 거치대, 벽면 선반) 입주 시 별도 지급되며 해당 아이템은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가구의 힌지, 레일 등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욕실, 발코니의 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차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엔지니어드스톤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 실외기실 혹은 발코니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됨)
-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차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계약자(입주자)가 추후 거실 벽걸이 TV 및 발코니 빨래건조대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해야 합니다.
-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통신 단차함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해야 합니다.
-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노출 및 바닥 마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탁공간의 세탁선반은 1단 접이식 선반으로 제공되며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에 따라 사용 될수 없습니다.(36타입 없음)
-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본 공사시 전원, 통신, TV용 배선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36㎡는 거실, 46㎡는 세탁실 발코니에 설치)
- ※ 주방TV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된 위치에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배치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식탁용 펜던트 및 펜던트용 조명설치를 위한 보강목은 제공되지 않으며, 식탁용 전등은 다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주택전시관의 코킹 시공부위 및 색상은 본 시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스쿱탑 위치는 편의성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달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일부구간은 코킹 시공)
-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휀룸 및 기계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상1층 필로티에 위치한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이며, 특정 동호수 라인에 가깝게 설치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램프 진입시 2.1m로 제한되며 택배차량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 지하창고에 세대창고는 계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실내 휘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상가 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 상가 외부에 블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휀스, 각종 계시판, 버스 쉼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과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와 색체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차 충전설비 구간에는 충전시간 외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이로 발생하는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에어컨의 경우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홍보물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부분 준공(기부채납공사:공원,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예정이며 평촌센텀퍼스트 아파트부터 우선 준공 조건인 사업지입니다.

#### ▣ 명칭

-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및 심의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우리 단지는 DL이앤씨(주)와 코오롱글로벌(주)이 구역을 분담하여 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01동~109동, 111동~113동은 DL이앤씨(주)가 시공하고, 110동, 114동~123동은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호계시장과 덕현초교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에 입주자 임의로 펜스설치는 불가하며, 공공보행통로의 개설로 인한 소음, 기타 외부인의 통행 등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감리회사                                  |
|--------|--------------------------------|--------------------|----------------------|---------------------------------------|
| 상호     |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 코오롱글로벌 (주)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법인등록번호 | 134171-0004547                 | 110111-7736808     | 110111-0036502       | 174611-0003448                        |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33(호계동, 201호) | 서울 종로구 동일로 134 D타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별양동)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4층                |
| 기타     | -                              | -                  | -                    | 감리금액 :8,779,930,500원<br>(전기/소방 감리 별도) |

■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평촌 센텀퍼스트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1000-41
- **운영안내**
  - ※ 주택전시관은 사전예약 없이 방문관람 가능하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부에 따라 홈페이지 사전예약제로 주택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약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이 제한되오니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주택전시관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에 따라 당첨자가 아닌 일반인의 주택전시관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주택전시관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 전일까지 주택전시관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www.elife.co.kr](http://www.elife.co.kr)
- **분양문의** : 031-342-2886

-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